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시·도회를 순회하며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련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회 노무강습회 교재로 사용된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이번호부터 연재한다. [편집자주]

변경된 노동법률 및 노무관련제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겸업제한 삭제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가능/상호진출가능(기계설비업 2011년까지 제외)
- 전문건설 원도급 가능
- 무등록시공, 건설업면허 대여시 처벌강화
- 재하도급 관한 사항 지도/감독, 위반시 처벌강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증액 및 가입대상 공사 확대

2. 근로기준법 및 노무관련법률제도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최저임금 인상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 장애인 고용 분담금 신고 납부
- 2010.12.1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적용 확대
- 임금 체불시 체당금 상향 조정
- 2011. 7. 1 상시 5인 이상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

일용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실무

1. 4대 사회보험 주요 개정내용

- 사후정산제도 시행 : 2008년 1월 1일
- 4대 보험료 징수통합 시행 (건설업/별목업 제외) : 2011년 1월 1일
- 석면피해구제 부담금 신설 : 2011년 1월 1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 요율 인상 : 2011년 4월 1일
- 고용보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시 과태료 강화 : 2011년 1월 1일
- 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 개선 : 2011년 1월 1일

2. 건강보험 · 국민연금 사후정산제도

- 적용시기 법적 근거
공공 공사 계약시, 입찰 시 발주기관이 보험료를 계상한 금액을 고지하고, 입찰 시 이를 조정할 수 없게 한 후 계약 이행에 따라 정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국가발주공사 : 2006.12.29 개정일 이후 입찰부터 적용
- 지자체발주공사 : 2007.4.2 개정일 이후 입찰부터 적용
- 민간공사 : 2008.1.1 이후 입찰부터 적용

• 적용범위

적용대상자 : 직접 노무비 대상 일용근로자(본사 및 간접 노무비는 제외)

피보험자격 : 현장단위로 월 20일 이상 출역한 일용근로자

• 보험료 산정 방법

EDI 방식에 의한 자격변동신고 및 납부고지시스템 운영 “현장별 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

• 보험료 확정 정산 절차

공사 종료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근거하여 입찰공고 시 고지한 보험료 내에서 정산

3.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후정산제 도입

• 민간공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의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함.(건설법 제22조 5항) 건설업자가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토록 함.(건설법 시행령 제26조의2 3항 2008.1.1 시행)

• 관공사 및 지자체공사

공공공사 계약시, 입찰시 발주기관이 보험료를 계상한 금액을 고지하고, 입찰시 이를 조정할 수 없게 한 후 계약 이행에 따라 정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국가발주공사 2006.12.29 이후, 지자체 발주공사 2007.4.2 이후 적용

• 사회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 2010-152호)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 노무비×2.48%(1개월 이상 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 노무비×1.59%(1개월 이상 공사)

- 산재보험료 : 노무비×3.6%

- 고용보험료 : 노무비×1등급:1.23, 2등급:0.89, 3등급:0.74, 4등급:0.72, 5등급:0.69

- 노무비율 : 원도급28% , 하도급 : 32%

4. 사후정산 절차

•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작성시 사후원가검토 조건부로 계약하도록 사전 안내

• 입찰자는 보험료 변동없이 투찰하고 계약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시 보험료가 산출내역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 원수급인 현장설명시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내용설명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 단, “보험료납부인수계약”에 의거 “하수급인보험가입자납부인수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하청)가 납부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은 각 사업주단위로 현장별 1개월에 20일 이상 출역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최종 기성금 정산

• 원수급인은 하도급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원도급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가 청구

• 발주기관은 증빙 확인후 원수급인에게 원·하도급보험료를 포함하여 기성금 지급

• 공사 종료 후 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근거하여 입찰공고 시 고지한 보험료 내에서 정산

5. 사회보험 적용기준(취득·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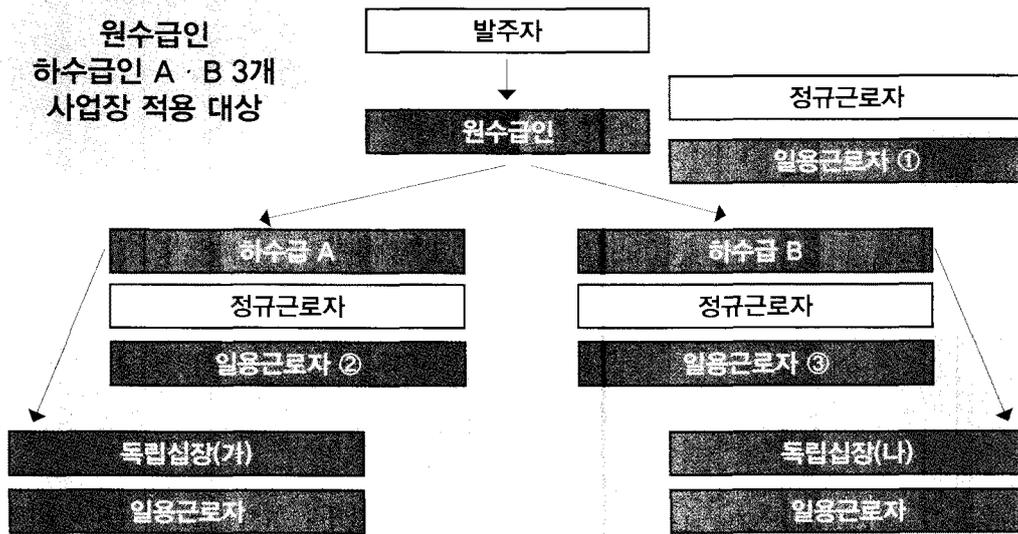
• 건설 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로서 당해 건설현장에 실제 투입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분리적용(행정안전부 예규 제 252호)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6. 사회보험 적용기준

-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



적용 대상에 따른 4대보험 징수

구분	적용대상	보험료 징수		
		보험요율	보험료 납부시기	보험료 납부절차
국민 연금	〈본사〉 - 1인 이상 〈현장〉 - 20일 이상/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임금총액 : 9% - 사용자 : 4.5% - 근로자 :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 자격취득 한달부 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고대상자(취득·상실) 신고(EDI 신고) ② 공단에서 정고지서 발급 (18~22일)
건강 보험	〈본사〉 - 1인 이상 〈현장〉 - 20일 이상/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임금총액 : 5.64% - 사용자 : 2.82% - 근로자 : 2.82%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사용자 : 6.55% - 근로자 : 6.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 자격 취득한 다 음 달부터(취득일이 1일인 경우 취득 월부터) 상실일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일괄경정고지서(매월 6일) ④ 수시경정신고(매월 9일) ⑤ 최종경정고지서에 의한 보험료 납부(매월 10일) *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가상 계좌납부 등
산재 보험	〈본사〉 - 1인 이상 〈현장〉 - 모든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무비의 3.6%(사업주 부담) 석면피해구제부담금 20인 이상사업장 0.05% 		
고용 보험	〈본사〉 - 1인 이상 〈현장〉 - 모든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사업 :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150인 미만 : 0.1% - 상시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 0.3% - 상시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5% - 1000인 이상 : 0.7% 실업급여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 0.55% 근로자 : 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보험연도 3.31일까지 (일시납부시 : 3% 공제) - 분기별 4회 분납가능 * 연도중 보험관계 소멸시 에는 소멸일로 부터 30 일 이내 신고 및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을 추정, 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출 ② 계산·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신 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실시 또 는 4회 분납 신청 • 보험료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가상 계좌납부 등
피보 험자 관리 (공통 사항)	<p>가. 4대사회보험에 대한 각종 신고 및 자격·보험료 조회 등의 업무는 인터넷 민원처리 가능 나. 인터넷 가능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장의 신규가입 ② 내역변경(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③ 자동이체 및 탈퇴신고 ④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신고 			

- 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
- 정규직 근로자는 본사의 사업장에, 건설일용 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 독립심장 및 소속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 B 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

• 근로자 적용기준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일수, 시간 불문함)
- 자격변동 기준 (최초 고용일 취득일), 〈상실일 사용관계종료(퇴사)일의 다음날〉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고용기간 1월미만인 경우 포함)

- 근로자 인정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 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7. 기획재정부-637(2008.3.20) 유권해석

• 질의 내용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지급 청구시 제1항 각호의 서류(보험료 납입확인서, 전회분 기성대가의 보험료 지급액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보험료등의 비율을 감안한다면, 보험료 정산시 정산의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생산직 상용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 근로자를 말함
- ▷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직접노무비만을 대상

• 정산대상 및 증빙서류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 및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중 사업주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 ▷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8. 행정관청의 각종 신고·보고 사항

• 건강보험·국민연금

- 사업장, 건설현장 적용신고(신규적용) 및 탈퇴신고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 피보험자 취득, 상실, 소득월액 변경
- 건설현장 경정고지내역서(매달 6일)
- 보험료 부과(매달 10일까지 납부)
- 제증명 발급(보험료 납부증명원 및 사업장, 근로자 가입증명)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 성립신고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함)
- 납부증명원 발급 및 근로자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 퇴직공제부금 지급

9. 행정관청의 각종 신고·보고 사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매년 3월 31일까

- 지 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함)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 지급]
 - ※ 50인 이상 고용시 자진신고 100인 이상 고용시 부담금 납부

Q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

A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자격취득시기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지역가입자 : 피보험자만 있음
- ※직장가입자 :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가 있음

Q 재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경우 4대 보험 신고는?

A 하도급사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함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 재하도급 본사 소속 상용근로자들의 4대 보험은 그 회사에서 신고를 하며, 직영, 시참자, 일용근로자들의 4대 보험신고는 하도급사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원도급사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어 하도급사와 재하도급사와의 불법 하도급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으로 하도급 계약을 했을지라도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 받을 수 없어 하도급사에서 직영, 시참자, 일용근로자들의 근로내역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하도급사 상용직 근로자들의 근로내역 신고는 재하도급사에서 신고 가능함

Q 하도급계약서상 퇴직공제부금이 초과하였을 경우?

A 발주자와 원도급사에 초과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의거 발주자는 도급금액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도급계약 당사자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원도급사와의 관계상 현실적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있음

Q 사업장관리번호와 미승인 하수급인관리번호가 무엇인가요?

A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여(보험료납부 및 근로내역신고번호), 미승인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여(근로내역신고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여

하도급공사금액 1억원 이상 시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 착공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을 통해서 해당 하도급공사의 산재/고용보험료의 납부를 하도급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여받은 번호)

※ 원도급사가 도급계약서사본,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제출

• 미승인 하수급인관리번호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여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근로내역신고를 하도록 원도급사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 (고용안정센터에서 부여받은 번호)

Q 하자보수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 여부?

A 본사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해야함

현장 종료로 현장에서 근로내역신고를 할 수 없음

- 근로내역신고는 공사계약 기간중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역신고
- 근로내역 신고시 공사명을 하자보수(현장명 기재)로 신고
- ※ 하자보수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신고해야함

Q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요건?

- A 일용근로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직접방문 신청**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 최종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을 것

- 실업급여 신청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일용근무자로 근무해야 하는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Q 미납 보험료 추징 대응방안?

- A 건강보험료 미납에 따른 추징시 대응방안**
- 현장별 노무비 명세서를 준비하고 근로일수를 19일 이내로 작성
 - A현장에서 2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A, B 두개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하여 20일 미만으로 줄여서 노무비 명세서 작성
 - ※ 국세청(일용근로자 지급조서)신고 및 고용센터(근로내역)에 신고 하므로 위 내용과 맞추어서 신고하여야 함

10. 고용보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시 과태료 부과 강화

위반행위	판단기준	금액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한자	-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내에 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를 한 경우 - 위반행위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위반행위(미신고·거짓신고)가 2회 이상 있었던 경우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미신고한 경우(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	- 최초 미신고한 경우(근로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최초 미신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 지연신고한 경우(시정지시에 따른 지연신고 포함)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하수급인 소속 본사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주체

- 적용근거 : 보험료 징수법 제9조제1항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 변경내용 : 원수급인이 하도급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 본사 소속 근로자(상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하도급 사업주에게 추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였다면 중복하여 징수한 것이므로 보험료를 반환함이 타당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가능(3년 정산)